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「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」

◇ 제·개정 이유

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검역요건을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,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이 검역적으로 안전하게 수입될 수 있도록 「수입금지식물 중 에콰도르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」을 제정·고시하고자 함

◇ 주요내용

가.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(안 제4조)

- 에콰도르 검역당국에 등록, 매년 수출 개시 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목록 통보

나.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관리(안 제5조 및 제6조)

- 과실판리 5종에 대한 예찰트랩조사 및 과수원의 단위일 트랩 당 검출되는 과실판리의 수(FTD)를 0.14 미만으로 유지

다. 선과 및 포장(안 제8조)

- 포장상자에 수출과수원과 선과장의 등록번호 및 “For Korea”표기

라. 온탕침지처리, 수출검역 및 증명(안 제7조 및 제9조)

- 망고 무게별 처리시간에 따라 46℃ 이상의 온탕에서 침지처리

- 온탕침지처리된 망고 수출화물의 2% 또는 최소 600개 표본 수출검역

마. 국외생산지검역(안 제11조)